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상 품 약 관

목　　차

■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
○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상품요약서(1종: 교통상해형)
○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상품요약서(2종: 일반상해형)

■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특별약관**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2.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3. 신주말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4.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5.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6.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7. 일반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8.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9. 운전중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10. 신주말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11.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12. 일반상해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13. 교통상해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14. 면허정지위로금담보 특별약관
15. 면허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
16.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17. 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18.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 특별약관
19. 형사합의지원금(중상해)담보 특별약관
20.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
21. 자기차량전손위로금담보 특별약관
22. 긴급견인비용담보 특별약관
23.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담보 특별약관
24.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담보 특별약관
25. 상해흉터복원수술비담보 특별약관
26. 골절진단/골절수술위로금담보 특별약관
27. 화상진단/화상수술위로금담보 특별약관
28. 강력범죄위로금담보 특별약관
29.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30.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상해 부담보특별약관
31.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2. (갱신형)상해실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별표 1] 장해분류표
[별표 2]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
[별표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 4] 골절분류표
[별표 5] 화상분류표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 통 약 관

(1종 : 교통상해형)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농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공제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공제가입금액
4.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공제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제19조에 의한 해약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이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①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농협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료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보장공제료"라 합니다)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적립공제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공제료"와 "적립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라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공제료의 납입】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납입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농협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①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

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공제료에 대하여 이 공제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2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2.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질병
6.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4조【사망공제금】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사망공제가입금액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이 보통약관의 가입금액
탑승중 교통사고 또는 비탑승중 교통사고	이 보통약관의 가입금액의 20%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후유장해공제가입금액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이 보통약관의 가입금액
탑승중 교통사고 또는 비탑승중 교통사고	이 보통약관의 가입금액의 20%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후유장해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6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공제금을 받는자(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공제금의 지급한도】①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후유장해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을 받는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①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부분 공제료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농협은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에 이 공제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복리 2.0%로 합니다.

<용어풀이>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농협의 운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농협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농협은 이 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소멸시효】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라 함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22조【공제금 청구권의 상실】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함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위반시 공제계약의 해지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농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직원"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

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 통지】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계약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4조(사망공제금)의 경우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 경우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①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손해의 통지】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공제금 지급시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공제금의 지급】① 농협은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공제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고용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3조【환급금의 지급】① 농협은 계약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농협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농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공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공제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농협의 손해배상책임】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법률에 의한 지급보장】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준거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 통 약 관
(2종 : 일반상해형)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농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

(공제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공제가입금액
4.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공제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제19조에 의한 해약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이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①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농협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료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보장공제료"라 합니다)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적립공제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공제료"와 "적립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라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공제료의 납입】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납입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농협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①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공제료에 대하여 이 공제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2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인,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4조【사망공제금】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6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공제금을 받는자(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공제금의 지급한도】①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후유장해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①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부분 공제료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농협은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에 이 공제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복리 2.0%로 합니다.

<용어풀이>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농협의 운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농협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농협은 이 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소멸시효】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라 함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22조【공제금 청구권의 상실】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함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위반시 공제계약의 해지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농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직원"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

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 통지】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계약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4조(사망공제금)의 경우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 경우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①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손해의 통지】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공제금 지급시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공제금의 지급】① 농협은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공제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고용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3조【환급금의 지급】① 농협은 계약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농협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농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공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공제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농협의 손해배상책임】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법률에 의한 지급보장】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준거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특 별 약 관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사망공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 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나이,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의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공제금】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율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3. 신주말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의 신주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사망공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 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나이,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4.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의 신주말에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공제금】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율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5.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대중교통이용중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대중교통이용중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공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6.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특정여가활동중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때 그 상해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②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③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④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2.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공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공제금】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7. 일반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일반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일반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8.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9 운전중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10. 신주말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의 신주말에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신주말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신주말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11.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 대중교통 이용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대중교통 이용중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대중교통이용중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④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은 제외합니다.

12. 일반상해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농협이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협은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2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농협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교통상해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농협이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자가용운전자 교통상해임시생활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자가용운전자 교통상해임시생활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협은 교통상해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⑤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2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농협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면허정지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일당액을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면허정지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서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면허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을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면허취소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및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 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방어비용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동승자포함)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3〕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공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⑧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2. 계약자의 고의
3.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공제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공제금등 청구시 구비서류】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기타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공제금의 비례분담】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계약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농협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9. 형사합의지원금(중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공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2. 계약자의 고의
3.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5.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공제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공제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기타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공제금의 비례분담】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계약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농협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자기차량전손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에 전부손해(사고발생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가 발생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자기차량전손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전부손해라 함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공제가액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긴급견인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가 운전 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견인비용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7.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8.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운전회피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란 의사에 의한 치료, 처치를 말하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던 상해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란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보상이 되었던 손해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동일사고로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5. 상해흉터복원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안면부	상지・하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흉터복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농협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상해흉터복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6. 골절진단/골절수술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4]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2. [별표4]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골절수술위로금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농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골절진단위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에서 규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골절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골절수술위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에서 규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골절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7. 화상진단/화상수술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공제기간(이하「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화상분류표([별표5]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또는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화상수술위로금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농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화상진단위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화상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화상수술위로금】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화상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그때까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8. 강력범죄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약관)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을 강력범죄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 및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등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9.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 정한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공제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공제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이하「피공제자 본인」 이라 합니다)
2. 피공제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③ 제2항에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 본인과 피공제자 본인 이외의 피공제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계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공제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①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지급공제금】① 농협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공제자가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농협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손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

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8조【공제금의 분담】① 농협은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농협은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농협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0.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① 이 특별약관은 공제계약(공제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특약」, 공제계약자는「계약자」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공제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농협은 공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을 주된 판매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농협은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1.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 납입】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공제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공제료의 영수】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보통약관(1종:교통상해형, 2종:일반상해형)(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2. (갱신형)상해실손의료비담보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담보특별약관은 사람의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한 손해(의료비에 한합니다)를 농협이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1] '용어의 정의'와 같습니다.

제1관 농협이 보상하는 사항

제1조【보상내용】① 농협이 이 특약의 공제기간중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공제가입금액(5천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금 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금 액
외 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 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1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상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및 통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입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상해당 공제가입금액(5천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최고한도로 하며, 통원의료비중 외래의 경우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의 경우 농협은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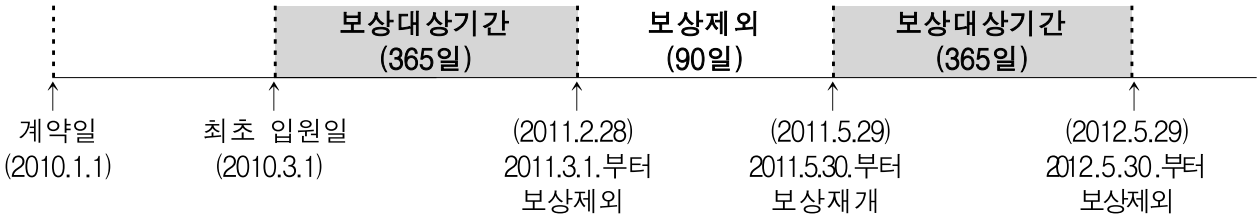

⑤ 제1항 제1호의 경우 특약이 갱신되어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등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특약의 공제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공제기간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는 특약의 공제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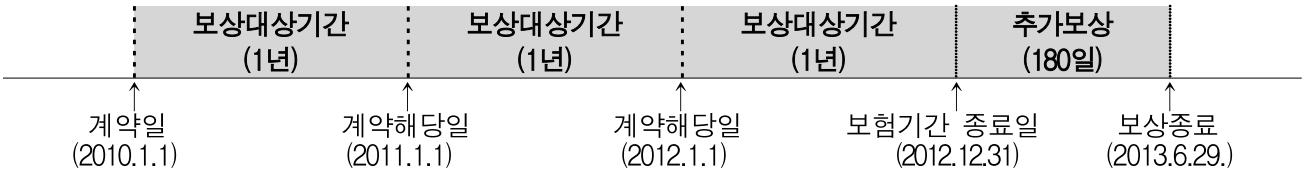

⑧ 제1항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외래의 공제금액은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제2관 농협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농협이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농협이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사고(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을 포함합니다)
8.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
②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농협은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농협이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농협이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3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농협은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농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은 후, 단체(취급)계약 및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농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공제계약대출이율(이하 “공제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또는 담보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수익자
5. 공제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농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공제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금을 현재 납입되고 있는 공제료에 의해서 정정된 나이 및 성별에 적용되는 공제금의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농협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장 공제료의 납입 등

제10조(제1회 공제료 및 농협의 보장개시) ①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공제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농협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공제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공제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공제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공제료가 있으면 선납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를 선납공제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농협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농협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공제계약대출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농협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공제는 각 공제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3조(계약의 성립), 제10조(제1회 공제료 및 농협의 보장개시), 제18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농협은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농협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농협

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농협은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협은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농협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6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공제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6장 다수공제의 처리

제17조(다수공제의 처리) ① 다수공제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공제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공제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7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은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공제금 지급사유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농협에게 공제금(공제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농협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공제금 지급의 절차 등

제2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농협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농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5조(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나 수익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7조(공제금의 지급) ① 농협은 제2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제20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공제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환급금의 지급) ① 농협은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9조(공제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농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0조(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공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공제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1조(공제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농협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공제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공제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합니다.
④ 농협은 수익자에게 공제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장 분쟁조정 등

제3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갱신, 계약양도를 포함합니다)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 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농협은 관계 법규에 따라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공제계약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3조(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농협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농협은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 제작의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농협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농협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계약	공제계약
주계약	주된 공제계약
계약자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하는 사람
공제대상자 (피공제자)	공제금 지급사유 또는 공제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공제기간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최초계약	주계약 체결시 최초로 부가할 경우
갱신계약	특약의 공제기간 만료 후 제8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갱신 전 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
갱신일	갱신 전 계약의 공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상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됨(조산원은 제외)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입원	의사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용 어	정 의
통원	의사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사의 직접조제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처방조제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협은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다수공제	실손 의료공제계약(민영 보험,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공제계약을 말함
보상대상의료비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농협부담비율

[붙임2]

공제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등 공제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이율
해약환급금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공제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공제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이율

주) 1. 적립이율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1]

장 해 분 류 표

장해부위	장해의 분류	지급율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 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귀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코의 장해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외모의 추상(추한모습) 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장해부위	장해의 분류	지급율
척추(등뼈)의 장해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40 30 10 50 30 15 20 15 10
체간골의 장해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남긴 때	15 10
팔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다리의 장해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장해부위	장해의 분류	지급율
손가락의 장해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5 15 10 30 10 5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남긴 때(1발가락마다)	40 30 10 5 20 8 3
흉·복부장기/비뇨생식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별표 2]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

Ⅰ. 총　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율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장해부위별 장해분류 판정기준

1. 눈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분류 판단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2-1.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분류 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1.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5-2.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5-3.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

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8-1.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 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9-1.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분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시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장해분류표에 대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身體部位의 說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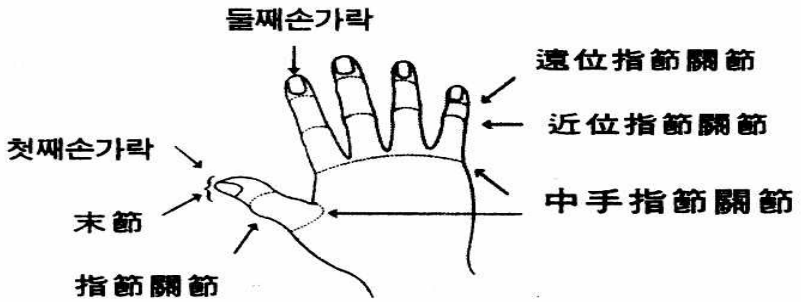
둘째손가락
遠位指節關節
近位指節關節
첫째손가락
中手指節關節
末節
指節關節

첫째발가락
末節
遠位指節關節
指節間關節
近位指節關節
中足指節關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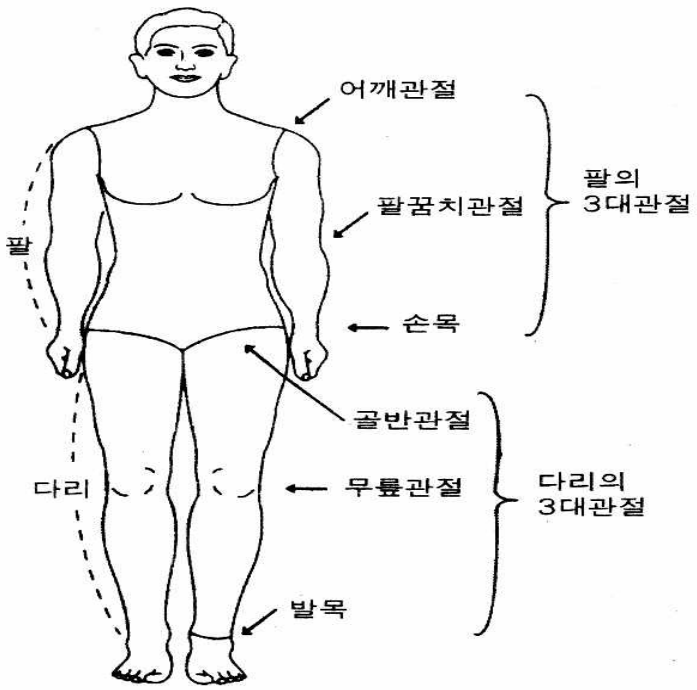
어깨관절
팔의
3대관절
팔꿈치관절
팔
손목
골반관절
다리
무릎관절
다리의
3대관절
발목

[별표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내지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아니하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별표4]

골절분류표

분류항목	분류기호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머리의 압착손상	S07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목의 골절	S12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넙적다리뼈의 골절	S7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T14.2

[별표5]

화상분류표

분류항목	분류기호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2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L59